

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. 5. 22 선고 2019가단24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19. 4. 17.

판결 선고 2019. 5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D 전 16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그 부분 6㎡에 설치된 차양막을 철거하고, 위 ㄱ 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제천시 D 전 164㎡의 소유자이다.

나. 제천시 D 전 16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㎡에는 피고가 설치한 차양막이 존재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

○ 다툼 없는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D 전 16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- 부분 6㎡에 설치된 차양막을 철거하고, 위 ㄱ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태현

별지